

●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-296호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안의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2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개를 도살·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,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0195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)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,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·운영,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1)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계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

나.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
- 1)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
- 2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
- 3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

다. 폐업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1)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'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을 폐업지원 대상 요건으로 규정함
- 2) 20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거나 2024년 2월 6일 이후 개사육농장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·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

라. 폐업지원의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1)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
- 2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·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, 식약처장,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

마. 폐업지원의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1) 농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,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도록 함
- 2) 농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살·처리하는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함
- 3) 식약처장 및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

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중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- 4) 개사육농장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폐업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바. 전업지원의 대상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1) 전업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폐업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
- 2) '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자와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·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
- 3)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
- 4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·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, 식약처장,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
- 5) 농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또는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,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,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 지원을 하도록 함
- 6) 식약처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또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을 위한 시설·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,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

사.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·기준 등 규정(안 제11조)

- 1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 30일 이내에 시설의 사진

철거, 자진 운영 중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
2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 15일 이내에 신고,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정안	수정안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
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
- 전자우편 : bcl1101@korea.kr
- 팩스 : 044-868-0134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(전화 044-201-2292, 팩스 044-868-01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절차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3조(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”이란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.

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(개식용종식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④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
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폐업지원의 대상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(이하 “폐업지원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
2.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

1. 20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
2.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·운영한 자

제7조(폐업지원의 절차) ①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폐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농장주: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폐업 지원신청서
2. 개식용 도축상인(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·처리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: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 지원신청서
3. 개식용 유통상인(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: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

용 유통상인 폐업 지원신청서

4. 개식용 식품접객업자: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 지원신청서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·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8조(폐업지원의 내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,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물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·처리하는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해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.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

폐업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해당 개사육농장이 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
2. 해당 개사육농장이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
3. 해당 개사육농장에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
4. 해당 개사육농장이 「농지법」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
5.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. 다만,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, 그 밖의 사유로 폐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6.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

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전업지원의 대상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 등 지원(이하 “전업지원”이라 한다) 대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전업지원의 대상이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인 경우에는 “폐업”을 “전업”으로 본다.

제10조(전업지원의 절차 및 내용 등) ①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농장주: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전업 지원신청서
2. 개식용 도축상인: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전업 지원신청서
3. 개식용 유통상인: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신청서
4. 개식용 식품접객업자: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신청서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·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

항을 지원해야 한다.

1.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.

가. 융자에 필요한 담보물을 갖출 것

나. 전업에 필요한 자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

다. 그 밖에 사업 내용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

2.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

3.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

4.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.

1. 전업을 위한 시설·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

2.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

3.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이행조치명령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: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·운영된 시설의 자진 철거 및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

2.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: 명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, 이행계획서 제출·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·보관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명령을 해야 한다.

④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.

제12조(과태료)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	법 제18조	150	200	300

또는 추가로 설치·운영한 경우	제1항제1호			
나.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2호	120	150	200
다.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3호	100	130	150
라.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별 관리 현황을 작성·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4호	90	120	150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18조 제2항제1호	40	60	80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18조 제2항제2호	50	80	100

농장주 []폐업 []전업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내용	농장명(명칭)	농장 운영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	
	농장 주소	폐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	농장 전화번호	전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유통상인 []폐업 []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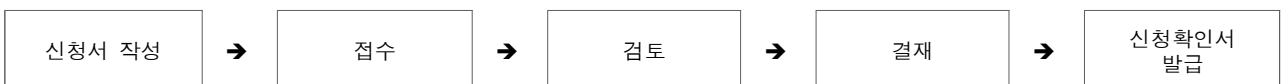
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

개식용 도축상인 []폐업 []전업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내용	업소명	운영기간(개고기 취급일 기준) 년 월 일 ~ 년 월 일	
	사업자등록번호	폐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	농장 전화번호	전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	업소 주소		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유통상인 []폐업 []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.

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

개식용 유통상인 []폐업 []전업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내용	업소명	운영기간(개고기 취급일 기준) 년 월 일 ~ 년 월 일	
	사업자등록번호	폐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	농장 전화번호	전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	업소 주소		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유통상인 []폐업 []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

접수



검토



결재



신청확인서
발급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

개식용 식품접객업자 []폐업 []전업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내용	업소명	운영기간(개고기 조리음식 취급일 기준) 년 월 일 ~ 년 월 일	
	사업자등록번호	영업신고번호	
	업소 전화번호	폐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	업소 주소	전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유통상인 []폐업 []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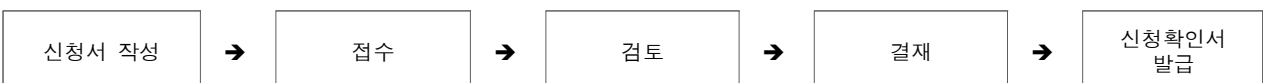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

제 호

농장주 등 []폐업 []전업 지원 대상 확인서

1. 성명(대표자):

2. 상호(명칭):

3. 영업장 소재지:

4. 운영 세부 종류:

([] 농장주, [] 개식용 도축상인, [] 개식용 유통상인, [] 개식용 식품접객업자)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[]폐업 []전업 지원 대상으로 결정
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